

2017 학년도

김포외국어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김포외국어고등학교

Gimpo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http://www.gfl.hs.kr>

2017학년도 김포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1. 모집 인원

모집단위		영어과 (4학급)	일본어과 (2학급)	중국어과 (2학급)	합 계 (8학급)
정원 내	일반전형	80	40	40	160
	사회통합 전형	20	10	10	40
	합 계	100	50	50	200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전형	2	1	1	4
	(국가유공자자녀전형)	(3)	(1)	(2)	(6)

2. 지원 자격

가. 공통 지원 자격(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①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②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③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2017 고입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영어)을 제출한 자.
 - ④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⑤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 ⑥ 외국어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의 중학교 졸업예정자(2017학년도 3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 ※ 위 ②~⑤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단독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 ※ 국내중학교 2학년, 3학년 영어 성적이 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나.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유형		지원 자격
정원 내	일반전형	공통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사회통합전형	공통 지원 자격자 중 다음 “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범위” 중 하나에 해당 하며,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단, 사회다양성 대상자(2,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전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해당자
	국가유공자자녀전형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 받은 자

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범위

구분

우선 순위

기회균등 대상자

1순위

지원 자격

①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③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권자)

④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⑥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 희생자(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형제·자매·자녀(손자녀 포함)
중 2014.4.16. 현재 중학교 재학생(▶ 2017학년도 고입 전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⑦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기준 중위 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 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 : 학교장, 교원, 학교운영위원 중 학부모·지역 위원 등 7~9명으로 구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지역 위원 반드시 포함). 단, 학교 규모가 학년당 200명 이하인 학교의 경우 5명으로 구성 가능

※ ⑦번 학교장 추천 학생만 학교장추천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예시]

-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월건강보험료(차상위 계층)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383,000	42,343	18,495	42,816
3인	1,790,000	55,080	35,715	55,121
4인	2,196,000	67,238	56,336	67,441
5인	2,602,000	80,113	79,010	81,149
6인	3,008,000	92,354	96,689	93,558
7인	3,414,000	105,039	114,226	106,359

○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월건강보험료(차차상위 계층)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60,000	51,189	30,611	51,846
3인	2,147,000	65,705	54,190	66,479
4인	2,635,000	81,149	80,277	82,114
5인	3,122,000	95,782	101,257	96,971
6인	3,610,000	111,270	123,024	112,699
7인	4,097,000	126,118	141,839	127,956

※ **가구원 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하고,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해 조부·조모를, 조부·조모도 없는 경우에 외조부·외조모를 가구원에 포함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자격				
사회다양성 대상자		※ 2순위, 3순위의 경우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소득구분	연소득 환산액	월소득 평균	건강보험료(최근 10개월 평균액)	
					직장	지역
					혼합	
		8분위	72,211,776	6,017,648	184,638	204,479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부·모 모두 확인(단,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를 같이 하고 건강보험증 상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료를 확인, 주거와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등록 요건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지원학생이 피부양자 등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자료 확인)				
		2순위	① 소년·소녀 가장(형제·자매 포함) ② 조손가정 학생 ③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④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⑤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해당자) ⑥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아동복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 보호된 아동)			
		3순위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 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까지)을 이수 중인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②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첫째 자녀부터 가능) ③ 준사관/부사관 자녀 ④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예정자(2016년 2월 29일 이전부터 원서 접수일 현재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⑤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⑥ 한부모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5호 해당자) ⑦ 3학년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기준 성적산출 인원수가 25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의 졸업예정자(학생의 지원에 의해 선발하는 중학교는 제외) ⑧ 의사자 자녀 ⑨ 장애인 자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1~3급 장애인의 자녀)			

라. 특례입학대상자 범위<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98조의 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1 단계 전형	원서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2016.11.10(목) ~ 11.15(화) 17:00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작성 - 2단계 전형 추천인 사전 지정 - 전형료 결제
	서류제출	2016.11.10(목) 09:00 ~ 11.15(화) 20:00	김포외고	- 입학원서 출력물, 학교생활기록부Ⅱ 각 1부 - 영어교과등급확인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추가 자격 증명 서류(해당자)
	합격자 발표	2016.11.18(금)	인터넷	- 본교 홈페이지
2 단계 전형	서류접수 (인터넷으로만 접수)	2016.11.18(금) ~ 11.21(월) 17:00	인터넷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작성
	서류제출	2016.11.18(금) 09:00 ~ 11.21(월) 17:00	김포외고	-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 각 4부 - 교사추천서 온라인 제출
	면접	2016.11.26(토)	김포외고	- 전형장소 입실시간 엄수 - 입실시간 등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최종합격자발표	2016.11.30(수)	인터넷	- 본교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소집		추후 공지	김포외고	- 등록 및 학교생활, 입학 전 과제물 안내

미달시 추가모집	서류접수 및 제출	2016.12.1(목) ~ 12.2(금) 17:00	인터넷 김포외고	- 정시모집의 일체 서류 - 서류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면접	2016.12.5(월)	김포외고	- 전형장소 입실시간 엄수 - 입실시간 등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합격자 발표	2016.12.6(화)	인터넷	- 본교 홈페이지

4. 전형 절차 및 방법

가. 전공어 지원

- 1) 전형별 전공어별 모집이면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모집
- 2) 전공어 지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1지망만 지원할 수 있음
- 3) 지원자는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함(단, 사회통합 전형자 1단계 전형에서 우선순위 선발로 인해 전형기회를 잃은 대상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한다)

나. 전형 단계(자기주도 학습전형)

전형	전형요소	배 점
1단계 전형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 + 출결(감점)	160점
2단계 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	40점
최종합격자 선정	1단계 점수 + 2단계 점수	200점

1) 1단계 전형(160점) :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감점)

가)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 및 출결(감점)점수로 면접대상자를 모집정원의 2배수 선발

나) 영어 내신성적 산출방식: 4개 학기 중2 성취평가제 성적 + 중3 석차9등급제

다) 영어 내신성적 환산점수 <표1-1>, <표1-2> 참조

라) 출결(감점) 환산점수 <표4> 참조

마) 1단계 전형 합격선에서 동점자 사정 기준에 의해서도 가릴 수 없는 동점자들의 경우
전원 2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발

2) 2단계 전형(40점) : 서류평가 및 면접

가) 내용 : 학생의 꿈과 끼 및 인성 평가

-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자기주도학습 과정, 지원동기, 학습계획 및 진로계획
- 인성영역 : 핵심인성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인성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나) 대상 : 1단계 합격자 전원

다) 방법 : 평가요소를 바탕으로 한 개별 면접

라) 평가 요소 :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교사추천서

■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및 면접 방법

—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 · 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자기소개서에 배제사항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로 관련 내용을 제출하거나, 면접 시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점 처리, 감점, 심사 제외 혹은 불합격 처리함.

※ 자기소개서에 영어 등 교내 · 외 각종 대회 수상실적,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사항 기재시 영점 처리하고,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 · 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 기재시 본교 기준에 따른 항목 배점의 10% 이상 감점 처리함.

※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영점 처리함.

— [잘못된 자기소개서의 작성 사례] —

-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TOEIC 시험에 응시해 450점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어공부에 매진한 결과 850점을 얻으며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 중2 겨울방학 중 000에서 주최하는 0000 경시대회에 참가해 2위 입상이라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 어렸을 적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인증시험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고, 전국 단위의 대회에 출전하여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OO지점 검사장이신 아버지를 따라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웠습니다.
- 기타 배제사항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문구 일체

- 제출된 자기소개서는 대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유사도 검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필여부를 확인하며, 대필 혹은 표절이 확인될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금칙어로 입상, 수상, 토익, 토플 등을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음)

- 면접은 입학전형위원회들이 면접요소를 바탕으로 서류심사 및 제출 서류 위주로 개별면접 실시.

- 면접시 필기고사 및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외국어 구술면접 · 토론, 외국어 동영상 활용 등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3) 최종 합격자 선정(200점)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의 합산

1단계 점수(160점)와 2단계 면접점수(40점)를 합산한 총점 우수자 순으로 모집정원 만큼 선발

4) 사회통합 전형 순위별 선발 방법

가. 1단계(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 선발)

- ① 1순위 지원자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로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지원자를 선발한 후 부족한 인원은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2배수로 2순위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미달 시 3순위를 선발한다.
- ③ 우선순위 모집으로 인해 지원기회를 잃은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 동일학과로 전환하여 전형한다.

나. 2단계 : 1단계 점수와 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아래의 방식을 준용한다.

- ① 1순위 지원자로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의 60%를 우선 선발한다.
- ② 1순위 합격인원을 제외하고 남은 모집인원은 1순위 탈락자, 2·3순위 대상자를 포함하여 순위에 관계 없이 통합 선발한다.

다. 같은 순위 내의 대상자간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추가모집 시에도 이 전형방법을 적용한다.

5)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 해당 보훈지청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2.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사회통합 전형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정원내로 선발하되, 교육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탈락자에 한해 모집 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한다(일반학생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3. 일반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모집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수만큼 일반 학생을 합격시킬 수 있다.

6)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하여 해당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학생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고등학교 학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기도특수교육위원회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의를 통하여 정원외로 선배치한다.

5. 전형 단계별 동점자 사정 기준

- 1) 1단계 전형에서 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1) ~ 4)의 우선순위로 사정함.
- 2) 최종 합격자 선정에서 1, 2단계 전형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같은 경우 다음 1) ~ 8)의 우선순위로 사정함.

- 1) 1단계 전형 3학년 2학기 영어교과 내신성적 우수한 학생
- 2) 1단계 전형 3학년 1학기 영어교과 내신성적 우수한 학생
- 3) 1단계 전형 2학년 2학기 영어교과 내신성적 우수한 학생
- 4) 1단계 전형 2학년 1학기 영어교과 내신성적 우수한 학생
- 5) 2단계 면접 성적 중 <자기주도학습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 6) 2단계 면접 성적 중 <인성 영역> 점수가 높은 학생
- 7) 1단계 전형 출결 감점 점수가 적은 학생
- 8) 이후 동점자는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6. 1단계 점수 산출(영어 내신성적(160점) + 출결(감점))

구분	영어 내신 성적
반영 방법	1) <표1-1>, <표1-2>에 의한 4개 학기 영어교과 내신성적 환산점수의 합으로 한다. 2) 영어내신성적은 2학년은 성취평가제 성적, 3학년은 석차9등급제로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하되 3학년 성적은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성적까지 반영한다.(단, 졸업생은 2차 지필평가(기말고사) 성적까지 반영한다) 3) 졸업예정자의 경우 결석(질병, 사고, 기타)등의 사유로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성적이 없는 경우 각 중학교의 내신성적 관리 지침에 의거 반드시 중학교에서 성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입 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평가 시험 응시자는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 성적 등급 환산점수로 한다. 5) 해외일반귀국자의 경우 국내중학교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 중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6) 기타의 사유로 4학기 성적 중 일부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표2>에 의해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내신성적 산출평가	1)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고입전형 과정에서 반드시 내신성적 산출평가 영어 성적 결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례 입학 대상자	1) 국내 중학교 성적이 단 한 학기도 없는 특례입학대상자 경우 졸업한 외국학교 성적표를 제출하여 <표3>에 의해 반영한다. 2) <표3>로 성적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출결 상황 산출 방식	1) 무단결석 감점은 <표4> 참조.(출결 점수(감점) = 무단결석일수 × 0.1) ※무단결석일수 5일 이상인 자는 출결(감점)을 -0.5점을 부여한다. 2) 무단결과, 무단조퇴, 무단지각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간주한다. (무단 결과/조퇴/지각의 합이 2회 이하일 경우 무단결석 0일로 간주) 3) 출결 마감기준일은 재학생은 2016년 10월 31일자, 졸업생은 전 학년으로 한다. 4) 출결 상황은 중학교 전체학년을 기준으로 반영하나 부득이 일부만 제시된 경우에는 일부만 가지고 반영할 수 있다. 5) 학교생활기록부Ⅱ가 있는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출결을 반영하고, 학교생활기록부Ⅱ가 없는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는 출결(감점)을 0점으로 한다.

◆ <표1-1> 중2 성취평가제 성취도 수준별 환산방식

성취도 수준	A	B	C	D	E
학기당 환산 점수	40	36	32	28	24

◆ <표1-2> 중3 석차 9등급제 등급별 환산방식

등급	석차 백분율(대상 인원)	환산 점수
1	~ 4% 이하(4%)	40.0
2	4% 초과 ~ 11% 이하(7%)	38.4
3	11% 초과 ~ 23% 이하(12%)	35.6
4	23% 초과 ~ 40% 이하(17%)	30.8
5	40% 초과 ~ 60% 이하(20%)	24.0
6	60% 초과 ~ 77% 이하(17%)	16.0
7	77% 초과 ~ 89% 이하(12%)	9.2
8	89% 초과 ~ 96% 이하(7%)	4.4
9	96% 초과 ~ 100% 이하(4%)	1.6

◆ <표2>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미비자의 내신성적 반영 방법

내용	학기 성적 반영 방법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2학년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2학년 1,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1, 2학기 영어 성적(성취도 수준)으로 대체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2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3학년 2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으로 대체
3학년 1, 2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 2학기 영어 성적(석차등급)으로 대체
3개 학기 영어 성적이 없는 경우	1개 학기 성적을 3개 학기 성적으로 대체 (2학년 :성취도, 3학년 : 석차등급)

※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중학교의 경우, 성적산출시 자유학기제 미운영 학기의 성적으로 대체하여 활용(예 : 2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2학년 1학기 성적을 2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3학년 1학기에서 자유학기제를 이수한 경우 3학년 1학기 성적을 3학년 2학기 성적으로 대체)

※ 중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2학년 성취도 수준이 없을 경우 수, 우, 미, 양, 가를 활용하여 수는 A, 우는 B, 미는 C, 양은 D, 가는 E로 성취도 수준 부여

◆ <표3> 특례입학대상자 해외 영어 내신성적 환산 방식(9등급제)

영어 과목 성적 평균 5점 만점(환산) 범위	영어 과목 성적 평균 100점 만점(환산) 범위	환산 점수
4.90 이상	98 이상	160점
4.75 이상 - 4.90 미만	96 이상 - 98 미만	153.6점
4.50 이상 - 4.75 미만	93 이상 - 96 미만	142.4점
4.25 이상 - 4.50 미만	90 이상 - 93 미만	123.2점
4.00 이상 - 4.25 미만	87 이상 - 90 미만	96점
3.50 이상 - 4.00 미만	83 이상 - 87 미만	64점
3.00 이상 - 3.50 미만	80 이상 - 83 미만	36.8점
2.50 이상 - 3.00 미만	75 이상 - 80 미만	17.6점
- 2.50 미만	- 75 미만	6.4점

※ 위의 경우와 다른 성적표기 방식일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표4> 무단결석 일수에 따른 출결(감점) 환산점수

무단결석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출결(감점) 환산점수	-0.1	-0.2	-0.3	-0.4	-0.5

7. 제출 서류

가. 1단계

지원자 공통 서류	■ 입학원서 출력물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출력물 별도양식) ■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출용 영어교과 등급 확인서 1부 ■ 학교생활기록부Ⅱ 1부
추가 자격증명 서류	※ 일반전형 졸업(예정)자 외 추가 서류 제출 해당자는 다음 “다. 추가 자격증명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

나. 2단계

학생 제출 서류	■ 학교생활기록부Ⅱ 4부. (원본 1부, 사본 3부) ■ 자기소개서 출력물 4부.
추천인 제출 서류	■ 교사추천서 (온라인 제출)

다. 추가 자격증명 서류

1) 1순위 기회균등대상자 추가서류

1순위 추가 공통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 1부 (별도양식)
법정 수급 권자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 통보된 자는 추가 제출 서류 없음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통보 이후 지정된 경우) 1부
		기타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1부 (맞춤형 개별급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복지급여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수급대상 확인서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중 1부 - 혹은 수급자 증명서 1부 (맞춤형 개별급여 중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차차상위계층)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희생자		- 학교장 확인서 1부
학교장 추천 학생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 객관적 증빙서류 1부.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건강보험료 영수증,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 증명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2, 3순위 추가 공통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학부모 확인서 및 학교장 추천서 1부 (별도양식)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자료 (최근 10개월 평균 납부액 영수증, 고지서, 납부확인서 중 택 1)
소년·소녀가장	- 공통 서류
조손가정 학생	- 공통 서류
북한이탈주민	- 관계기관 확인서 1부.
순직군경 자녀 순직소방대원 자녀 순직교원 자녀	- 순직 확인서 1부.
다문화가정 자녀	- 기본증명서(부·모)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모). - 국적취득(미취득시 여권사본/귀화) 증명서 1부(해당자).
아동복지시설보호아동	-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농어촌면단위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 입학일자 및 중학교 세부주소가 명시된 재학증명서 1부.
다자녀 가정 자녀	- 공통 서류
도서벽지중학교 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1부.
준사관/부사관자녀	- 복무확인서(복무기간 명시) 1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산업재해등급 확인서(근로복지공단) 1부.
한부모 자녀	- 혼인관계 증명서(한부모 기준)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5호 해당자
소규모 중학교 졸업예정자	- 중학교 3학년 2학기 1차 지필평가(중간고사) 총 재적인원이 명시된 중학교장 증명서 1부.
의사자 자녀	- 의사자 인정결과 통보서 또는 증서 사본 1부.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 경기도교육(지)청 발급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서(영어)” 사본 1부 (원본 지참)
“공동 지원 자격 ②~⑤항“ 해당자로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중학교 졸업자	-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
특례 입학 대상자	- 별도 구비 서류 참조 (학교 홈페이지)

- 10 -

8. 제출서류 유의사항

가. 1단계 서류

구분	비 고
입학원서 입력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 -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전형유형 및 전공어 변경 불가. - 2단계 교사 추천서 작성 교사를 미리 지정.
입학원서 출력물 제출	- 인터넷으로 접수한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제출.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탈모 상반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파일로 업로드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 '출결과 영어성적' 란은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거듭 확인하여 담임교사 날인 후 반드시 투명 테이프로 봉인 요함. - 출결 마감기준일은 재학생은 2016년 10월 31일자, 졸업생은 전 학년으로 함. - 방문(직접, 택배, 퀵),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시간 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시 수험표는 보관하였다가 2단계 면접시 필히 지참하여야 함.
영어교과 등급확인서	- 담임교사가 발행하며, 성적 등급란에 담임교사 날인 후 투명 테이프로 봉인 하며, 학교장의 직인 날인.
학교생활기록부 II	- 반드시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을 제외하고 출력한 학교생활기록부 II로 제출해야 함. -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담임교사의 원본대조 확인 날인. - 최종적으로 중학교장 직인으로 날인. - 각 페이지의 중간에 중학교장 직인으로 간인되어야 함. ※ 단,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생활기록부 II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인터넷 원서접수 창에서 출력하여 보호자와 지원자 자필 서명하여 입학지 원서와 함께 제출
내신성적 산출평가성적서	경기도교육(지)청 발행 내신성적 산출평가 성적서(영어)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기타 관공서 증명서	원서접수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에 발급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차(차)상위 및 사회다양성대상자의 월 소득인정액 산정자료 -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평균액(단, 노인장 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상 전가족이 기재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최근 10개월내 자격득실 사실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자격확인용 증빙서류	- 사회통합 전형자, 특례입학대상자, 내신성적 산출평가 응시자 등은 추가 증빙서류 확인을 위해 원본을 지참하여 직접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또는 원본 확인 후 사본)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 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발급서류로 같음
※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 작성. ※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경우 불합격 처리함. ※ 모든 제출서류(인터넷 접수 포함)에 대한 미도착, 서류 미비·착오·누락·오기·내신성적 기재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나. 2단계 서류

구분	비 고
학교생활 기록부 II (단면 인쇄)	1) 학교생활기록부 II 원본 1부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제외 - 중학교장 직인 및 간인, 원본대조필 2)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3부 - 수상경력(4번), 교과학습발달상황(7번) 항목 제외 - 직인, 간인, 원본대조필 불필요 - 학생 이름, 학교 이름 등 인적사항이 가려진 사본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자기소개서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 언어는 한글로만 작성(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 금지). - 본문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 및 면접 방법 참고). - 작성한 자기소개서는 4부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서류제출 마감시간까지 본교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함. - 방문(직접, 택배, 퀵),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며, 서류제출 마감시간까지 본교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수정은 가능하나, 본교에 제출하기 위해 출력한 후에는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됨.
교사추천서	- 1단계에서 지원자가 지정한 추천인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작성하여야 함. -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 반드시 제출 처리하여야 하며, 제출 처리 후에도 서류접수 마감시간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 가능함. - 다음 배제 영역을 직·간접적(우회적)으로 기재할 수 없음. 【 배제 영역 】 ■ 학생의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과 성적 및 학업 성취 정도, 교내 · 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학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 및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 지원 학생을 알 수 있는 이름, 출신중학교 등 인적사항 ■ 기타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거나 사회 통념상 입학전형에 불필요한 내용 - 재학 중인 학생의 추천서 작성은 현재 중학교 교사를 원칙으로 함. - 특례입학대상자전형의 교사 추천서는 재학 중인 국내 중학교의 교사로 함. - 검정고시 합격자의 추천서 작성자는 ·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사 · 공신력 있는 상담 기관의 전문 상담가 · 지원자가 다니는 종교 기관의 지도자로 함 ※ 단, 학원 강사, 지원자의 가족이나 친척 등의 추천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함
※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면접 전형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표지와 본문이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클립 으로 묶어 제출합니다.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지원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면접 당일 교사본부에서 재발급 받아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접장 내에는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당일 수거).	

9. 전형료 : 1단계 5,000원 2단계 25,000원 (온라인 접수 수수료 별도)

납부된 전형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기타

- 1) 본교 내의 입시 전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 가능하다.
- 2) 본교와 다른 전기 학교에 이중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절대 금지하며, 전기 학교 불합격자는 본교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 3) 면접 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홈페이지 주소는 별도 안내)
- 4)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 5) 본교 최종 합격자는 2017학년도 전·후기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전기 학교 추가모집 및 후기학교 정시,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 6) 전형일에는 휴대전화, 라디오수신가능 MP3 등 전자 기기의 소지를 엄격히 금지한다.(당일 수거)
- 7) 입학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 이미 원서가 접수된 뒤라 하더라도 응시 기회가 박탈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8) 입학 전·후에 상관없이 지원자격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9) 입학전형 중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원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후라도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 10) 입학금, 수업료 등록 관련 고지서는 별도로 고지하되 소정기간 내에 미납하였을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하며, 부모의 합격(등록)포기서와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11) 합격포기로 인한 결원은 입학전형 최종 총점의 차순위자로 후기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전까지 보충한다.
- 12) 미달 인한 결원은 추가 모집 기간에 추가 모집할 수 있으며, 관련된 사항은 추후 고지한다.
- 13)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미비, 기재사항 누락 등이 발견되면 원서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 14) 본 입시 요항은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의 기본 지침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15) 본 입시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우편번호 : 10023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37

☎교무실 : 031-996-7700

행정실 : 031-996-7702

FAX : 031-996-7704

학교홈페이지 : <http://www.gfl.hs.kr>

2016년 7월 30일

김 포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